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7호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1 4 1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	례 제 1 4 1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5
○ 조	례 제 1 4 1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10
○ 조	례 제 1 4 1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 조	례 제 1 4 2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

공 고

○ 공	고 제 1 1 0 9 호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공시	29
○ 공	고 제 1 1 3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예고	30
○ 공	고 제 1 1 3 6 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만의골지구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42
○ 공	고 제 1 1 3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44
○ 공	고 제 1 1 4 0 호 공유재산(만수동 1118-2) 매각 입찰 재공고	48
○ 공	고 제 1 1 4 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55
○ 공	고 제 1 1 4 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만의골지구 소3-2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61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1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67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1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75

고 시

○ 고	시 제 6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86
○ 고	시 제 6 8 호 도로명주소 고시	88
○ 고	시 제 6 9 호 2016회계연도 결산 고시	91

○ 고	시 제 7 0 호 도로명주소 고시		99
○ 고	시 제 7 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수산동 소2-2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		102
○ 고	시 제 7 2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7차) 고시공고 [논현동 765-1번지]		104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7년 6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위임 근거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개정됨(2016. 4. 26.)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을 반영함 (제1조, 제16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제15조)
 - 모사전송기 ⇒ 팩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7년 6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동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 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남동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 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교부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남동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제2조제1항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의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 법률체계를 국세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에 제정·이관하고,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규정함 (제1조)
-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 삭제 (제2조)
- 구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조)
-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명시 (제4조)
-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 제7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7년 6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됨에 따라, 종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제1조, 제2조, 제4조)
- 종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7년 6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제출 전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 계획서 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분석평가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분석평가 교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등을 규정함 (제5조 ~ 안 제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 안 제16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8조)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를 규정함 (제19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7년 6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4. 구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제6조)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109호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7년6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시기준일: 2017년 1월 1일
2. 공시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6-11번지,
간석동 153-27번지, 만수동 975-14번지
3.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의 면적 등
4. 열람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문,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남동구청 세무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1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6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7급													
행정	133	69	3		3	58	132	68	3		3	58	△1
시설	38	38					37	37					△1
행정·시설	3					3	5	2				3	2

※ 총정원 및 해당직렬·직급 정원은 변동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7년 하반기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7급													
행정	133	69	3		3	58	132	68	3		3	58	△1
시설	38	38					37	37					△1
행정·시설	3					3	5	2				3	2

※ 총정원 및 해당직렬·직급 정원은 변동없음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비용추계서

- 추가소요 인건비 : 없음(총정원 및 직급조정이 없으므로 추가비용 발생치 않음)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1]

기관별·직급별정원(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비고 (행정부서)
총 계		1,006	551	20	72	22	341	(4)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002	547	20	72	22	341	(4)
	2 급 소 계	1	1					
	지 방 이 사 관	1	1					
	4 급 소 계	6	4	1	1			
	지 방 서 기 관	4	3	1				
	지 방 기 술 서 기 관	2	1		1			
	5 급 소 계	62	32	2	7	2	19	
	행 정	14	12	2				
	의 무	3			3			
	행 정 · 사회 복지	11	6			1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보 건	6			1		5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4	7			1	6	
	행정 · 보건 · 시설	4					4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농업 · 해양 수 산	1	1					
	행정 · 녹지 · 시설	1	1					

행정 · 보건 · 간호	2			2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의무	1			1			
6 급 소 계	269	149	8	17	5	90	
행정	122	66	7		3	46	
세무	8	8					
전산	1	1					
사회복지	7	6				1	
숙기	1		1				
공업	3	3					
녹지	1	1					
보건	2			2			
간호	1			1			
환경	4	4					
시설	13	13					
방송통신	1	1					
운전	3	2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 · 세무	10	7				3	
행정 · 사회복지	31	6			1	24	
행정 · 사서	1	1					
행정 · 공업	3	2				1	
행정 · 녹지	4	1				3	
행정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5			3		2	

행 정 · 환 경	4	2				2	
행 정 · 시 설	15	9				6	
행정 · 방송통신	2	2					
공 업 · 시 설	2	2					
녹 지 · 시 설	1	1					
보건 · 의료기술	1			1			
보 건 · 간 호	5			5			
의료기술 · 간호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행정 · 공업 · 환 경	1	1					
행정 · 공업 · 시 설	3	2			1		
행 정 · 농 업 · 의 수	2	2					
행정 · 보건 · 간 호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행 정 · 보 건 · 의 료기술 · 간호	2					2	
7 급 소 계	380	208	7	27	7	131	(4)
행 정	132	68	3		3	58	(4)
세 무	16	16					
전 산	7	7					
사 회 복 지	56	8				48	
속 기	2		2				
공 업	6	6					
농 업	2	2					
녹 지	6	6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1			11			
의 료 기 술	6			6			
간 호	6			6			
환 경	9	9					
시 설	37	37					
방 송 통 신	3	3					
간 호 조 무	1			1			
운 전	13	6	1		1	5	
전 화 상 담 운 영	1	1					
전 기 운 영	0	0					
기 계 운 영	2	2					
사 무 운 영	8	6	1			1	
행 정 · 사회 복지	4				1	3	
행 정 · 사 서	2	2					
행 정 · 시 설	5	2				3	
행 정 · 세 무	30	20				10	
행 정 · 녹 지	2					2	
행 정 · 환 경	1					1	
공 업 · 환 경	1	1					
공 업 · 시 설	4	2			2		
농 업 · 수 의	1	1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간 호	3			3			
행 정 · 사회 복지 · 시 설	1	1					
8 급 소 계	250	128	2	19	7	94	

행	정	103	61	1		3	38	
세	무	4	3			1		
전	산	3	3					
사	회	47	9				38	
사	서	2	2					
공	업	5	5					
농	업	2	2					
녹	지	6	5			1		
보	건	12	1		11			
의	료	2			2			
간	호	4			4			
환	경	4	3			1		
시	설	12	12					
방	송	2	2					
운	전	5			1		4	
기	계	1	0	1				
사	무	7	3				4	
전	기	1	1					
행	정	10	6				4	
행	정	8	3				5	
행	정	2	2					
행	정	1					1	
행	정	1	1					
공	업	1	1					
공	업	4	3			1		

보 건 · 간 호	1			1			
9 급 소 계	33	24	0	1	1	7	
행 정	3	0				3	
세 무	0	0					
전 산	1	1					
사 회 복 지	6	3			1	2	
사 서	1	1					
농 업	2	2					
녹 지	1	1					
보 건	0			0			
간 호 · 의 료 기 술	1			1			
시 설	7	7					
공 업	2	2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3	1				2	
행 정 · 공 업	0	0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방 재 안 전	3	3					
행 정 · 사 서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3	3					
5 급 상 당 소 계	1	1					
비 서 실 장	1	1					
6 급 상 당 소 계	1	1					

	비	서	1	1					
	7 급 상 당 소 계		1	1	0	0	0	0	0
	비	서	1	1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136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6월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2017. 6. 28. ~ 2017. 7. 15.
 4.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공고기간 내
 - 나. 보상시기 및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비를 계약체결 후 지급
 - 다.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032) 453 - 2712)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토 지: 신분증1부,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통장사본
 - 지장물: 신분증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통장사본, 지장물소유확인서
- ※ 보상대상 토지의 근저당,(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사전 해지 후 협의

5. 공시송달 내역

○ 토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사 유	비 고 (등기번호)
				성명	주 소		
장수동	59-9	도	24*431. 48/3129	최*락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방로**, ***동 ***호(만수동,**아파트)	수취인불명	1899686475433
	60-14	도	25				
장수동	123-7	답	74	이*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 ***동 ***호	폐문부재	1899686475430
	123-11	답	6				

○ 지장물

동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사 유	비 고 (등기번호)
				성명	주 소		
장수동	123-7	조경석	0.5x0.5	이*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 ***동 ***호	폐문부재	1899686475430
		수목	느티나무 H8.0xB50				

6. 기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1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6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영개발단 전략사업팀 신설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을 정비하여 구민복리 증진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구 본청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 (안 별표1)

- 공영개발 사업단 신설사무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영개발단 전략사업팀 신설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을 정비하여 구민 복리 증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본청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 (안 별표1)
 - 공영개발 사업단 신설사무 추가

☐ 본 문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140호

공유재산 매각 입찰 재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재산(남동구 만수동 1118-2)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확인 및 도시계획저촉, 행정상 제한사항 확인 등 각종 공부를 열람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토지) 매각

나.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가〉	비고
1	남동구 만수동 1118-2	대	1,405.3	제2종일반 주거지역	5,470,303,300	

다.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17. 7. 3.(월) 09:00 ~ 2017. 7.11.(화) 16:00
전자입찰서 제출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
현 장 설 명	별도 설명회 없음
개 찰 일 시	2017. 7.12.(수) 10: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2. 입찰참가 자격

가. 모든 사람(내·외국인 및 법인 포함)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일까지 “첨부1”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공동입찰자의 날인 및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제출하고 대표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입찰참가신청서<첨부1>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은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입찰자는 ‘온비드’를 통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공동입찰 체크 후 공동 입찰자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온비드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입찰(공개경쟁)이며,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라.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공동입찰 각 구성원 포함)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추첨(난수발생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공동입찰 각 구성원 포함)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에서 일괄대체 합니다.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전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다. 외국인 등이 「외국인 토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토지취득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허가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 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금전액을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합니다.
- 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법령,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인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가. **낙찰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물건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현황상태**로 매각하며, 공부와 지적상의 하자나,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제한, 기존 점유 사용자와의 분쟁, 실제와의 불일치, 도시계획저촉, 매각재산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및 적치물 등 모든 지장물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매매계약 체결이후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과납금 중에서 계약보증금, 원상 회복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이자 가산 없이 반환합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현장 확인, 재산목록, 공부서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치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수속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처리하여야 하고,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전에는 토지사용승락이 불가합니다.
- 사. 낙찰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에 의합니다.
- 자. 기타 물건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 입찰공고, 집행,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52 / 이근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온비드 시스템 상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여부, 입찰결과 확인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온비드콜센터(☎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6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첨부1]

공 동 입 찰 참 가 신 청 서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산

- 공고기관 :
- 공고일자/공고번호 :
- 물건관리번호 :
- 물건명 :

2. 공동입찰자 참가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분(%)	날인

공동입찰 참가신청인 일동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의해 실시하는 귀 기관의 물건 입찰에 위 신청인 중 _____을(를) 대표 입찰자로 선정하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하며 동 대표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인)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14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 1-10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7-12호(2017. 1. 20)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 1-10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후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년6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80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
 - 명 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 중로 1-10호선)
- 사업 규모
 - B=20~23m, L=1,38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도로시설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	장수동	381-5	도	44	44	-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22	장수동	381-6	도	50	50	-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23	장수동	383-3	도	20	20	-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24	장수동	383-4	도	7	7	-	7	인천광역시 남동구					
25	장수동	386-12	도	718	30	-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26	장수동	387-6	도	96	96	-	96	인천광역시 남동구					
27	장수동	388-18	전	21	21	-	21	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호(간석동 **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호(간석동 **아파트)	*****협동 조합(****지 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동****호(금곡 동, 청솔마을)	근저당	
28	장수동	388-19	도	89	89	-	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29	장수동	389-5	도	2	2	-	2	인천광역시 남동구					
30	장수동	389-6	도	94	94	-	94	인천광역시 남동구					
31	장수동	389-7	도	2	2	-	2	인천광역시 남동구					
32	장수동	391-3	도	173	173	-	173	인천광역시					
33	장수동	394-1	도	737	737	-	737	인천광역시					
34	장수동	394-13	도	41	41	-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35	장수동	395-4	도	1	1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36	장수동	395-6	도	32	32	-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37	장수동	397-2	도	17	17	-	1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38	장수동	397-5	도	61	61	-	61	인천광역시					
39	장수동	397-12	도	268	268	-	268	인천광역시					
40	장수동	397-16	도	2,224	2,224	-	2,224	인천광역시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1	장수동	398-5	도	3	3	-	3	인천광역시					
42	장수동	398-10	도	65	65	-	6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43	장수동	411	차	7,834	0.1	-	0.1	인천광역시					
44	장수동	450-5	도	402	402	-	402	인천광역시					
45	장수동	751-16	도	89	89	-	89	국 (국토교통부)					
46	장수동	751-18	도	197	197	-	197	국 (국토교통부)					
47	장수동	751-19	도	46	46	-	46	국 (국토교통부)					
48	장수동	751-21	도	59	59	-	59	국 (국토교통부)					
49	장수동	751-22	도	2	2	-	2	국 (국토교통부)					
50	장수동	산147-3	임	21	21	-	21	유**	캐나다국 온태리오주 토론토시 배너타인 드라이브***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옥련동** * 럭키송도아파트 ***-***	가등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51	장수동	산148-1	임	859	859	-	859	인천광역시					
52	장수동	산149-1	임	1,189	1,189	-	1,18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구월 동)				
53	장수동	산151-10	임	945	945	-	945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우성아파트*동****				
								인천광역시					

구 분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54	장수동	산151-11	임	965	965	-	965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동*** *				
								인천광역시					
55	장수동	산151-12	임	1,875	1,875	-	1,875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동*** *				
								인천광역시					
56	장수동	산151-14	임	312	312	-	312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동*** *				
								인천광역시					
57	장수동	산169-3	도	2,087	2,087	-	2,087	국 (국토교통부)					
58	장수동	산172-1	임	1,976	1,976	-	1,976	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인천광역시					
59	장수동	산173-1	임	429	429	-	429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동*** *				
								인천광역시					
60	장수동	산173-2	임	373	373	-	373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동*** *				
								인천광역시					
61	장수동	산173-4	도	1,295	1,295	-	1,295	국 (국토교통부)					
62	장수동	산173-5	도	695	695	-	695	국 (국토교통부)					
63	장수동	산174-4	임	95	95	-	95	국(국방부)					
64	장수동	산174-5	임	335	335	-	335	국(국방부)					
65	장수동	산174-8	임	486	486	-	486	국(국방부)					

구 분	소재지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66	만수동	3-121	전	22	-	증) 22	22	최병삼	인천 남구 경원대로852번길 10-20(주안동)				추가
67	만수동	3-122	전	55	-	증) 55	55	송석만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15, 708동 902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지7단지)				추가
68	만수동	3-123	전	5	-	증) 5	5	이현중	인천 남구 도화동 521	송파세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압류	추가
								이미선	인천 남구 도화동 52				
								이미정	인천 남구 도화동 521				
								이현석	인천 남동구 간석동 893-1 우성아파트 3동 507호				
								이현석	인천 남구 도화동 521				
								이미정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미성아파트 8동 214호				
								이미선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7 경남아파트 306동 1503호				
								이현중	인천 남동구 간석동 89-31 우성아파트 3동 507호	송파세무서, 장실세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압류	
69	만수동	820-3	도	14	-	증) 14	14	국 (국토교통부)					추가
70	만수동	3-97	도	462	-	증) 11	11	인천광역시					추가
				43,751	34,671.1	증) 107	34,778.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14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만의골지구 소3-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시 제2016-86(2016. 8. 10)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 만의골지구 소3-2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6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140번길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만의골지구 소3-2호선)
 - 명 칭 :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 규모
 - 소로3-2호선, B=6.0m, L=374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8. 7.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123-7	답	74	74	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함박외로115 ○○	주식회사 ****	서울시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변경 없음
2	53-1	대	13	13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				변경 없음
3-1	55-2	대	52	52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				변경 없음
3-2	55-1	대	20	20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				변경 없음
4	123-11	답	6	6	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함박외로115 ○○	주식회사 ****	서울시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변경 없음
5	122-4	대	23	23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				변경 없음
6	122-3	전	102	102	신○○	경기도부천시 원미구도약로56 ○○	***** 조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없음
7	729-16	도	399	399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	57-16	도	129	129	이○○	인천광역시남구 도화동 ○○				변경 없음
9	59-9	도	24	24	최○○ 외2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1048 ○○				변경 없음
10	57-15	답	34	34	이○○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				변경 없음
11	60-14	도	25	25	최○○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수동1048 ○○				변경 없음
12	58-12	도	37	37	김○○	인천광역시남동구 운연동 ○○				변경 없음
13-1	59-8	전	42	42	김○○	인천광역시연수구 컨벤시아대로100 ○○	***** 조합	인천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없음
13-2	59-7	전	3	3	김○○	인천광역시연수구 컨벤시아대로100 ○○	***** 조합	인천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없음
14	58-11	답	25	25	최기○ ○	인천광역시남구 학익동48-14 ○○				변경 없음
15-1	727-33	천	113	113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5-2	727-34	천	4	4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6	66-5	답	31	31	김○○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수동 ○○	***** 조합	인천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없음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7	66-4	도	60	60	김○○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수동 ○○	***** 조합	인천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없음
18	65-1	대	15	15	운○○○	서울특별시종로구 내수동 ○○				변경 없음
19-1	730-6	도	71	71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9-2	730-7	도	187	187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20-1	63-10	전	141	141	최○○	경기도부천시소사구 경인로 526번길 ○○				변경 없음
20-2	63-11	전	17	17	최○○	경기도부천시소사구 경인로 526번길 ○○				변경 없음
21	71-1	도	12	12	김○○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수동 ○○				변경 없음
22	71-2	대	2	2	김○○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가 ***	근저당권	변경 없음
23	73-2	대	1	1	박○○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				변경 없음
24	73-3	대	6	6	배○○ 외1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담방로22-16, ○○				변경 없음
25	73-4	대	1	1	박○○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				변경 없음
26	72-1	대	120	120	김○○	서울특별시 당주동 ○○				변경 없음
27	74-1	대	46	46	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				변경 없음
28	63-17	전	7	7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없음
29	63-12	전	45	45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없음
30	75-7	도	22	22	최○○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수동 ○○				기정
30	75-7	도	22	22	이○○	인천광역시 서구 태평로 ○○번길 ○○, ○○동 ○○호(연희동,○○아파트)				변경
31	75-6	대	24	24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2	63-13	전	24	24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3	63-16	전	296	296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동구 장수동	123-7	바닥	목재데크	96.0	m2	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함박외로115, ○○	기정
				조경석	26.0	ea			
			담장	목재	15.0	m			
				단풍나무	1.0	주			
1	남동구 장수동	123-7	바닥	조경석(0.5x0.5)	26.0	ea	이*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변경
			수목	느티나무(H8.0xB50)	1.0	주			
1-1	남동구 장수동	123-7	바닥	목재데크	96.0	m2	강*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번길 **	변경
			담장	목재(H0.5)	15.0	m			
			기타동산	전기시설등	1.0	식			
2	남동구 장수동	55	담장	철재	14.0	m2	김○○	서울특별시 당주동 ○○	변경 없음
3	남동구 장수동	122-2	화장실	조립식	2.2	m2	김○○	서울특별시 당주동 ○○	기정
			주거	블록,기와	68.8	m2			
3	남동구 장수동	122-2	화장실	조립식	2.2	m2	김*훈	서울특별시 당주동 ***	변경
			주거	블록,기와	68.8	m2			
			계량기		1.0	식			
4	남동구 장수동	122-1	담장	블록	45.0	m	신○○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상동526-1진달래마을 ○○	변경 없음
5	남동구 장수동	57-13	입간판		1.0	ea	이○○	인천광역시남구 도화동 ○○	기정
					1.0	ea			
			수목	소나무	1.0	주			
5	남동구 장수동	57-13	입간판	쌈밥정식	1.0	ea	이*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목동,*****)	변경
			수목	향나무(H2.3xB40)	2.0	주			
			수목	주목	2.0	주			
			수목	버드나무	1.0	주			
5-1	남동구 장수동	57-13	입간판	힐링	1.0	ea	조*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동 ****호(논현동, *****)아파트)	변경
6	남동구 장수동	58-6	입간판		1.0	ea	김○○	인천광역시남동구 운연동 ○○	기정
					1.0	ea			
			수목	단풍나무	1.0	주			
				조경수	4.0	주			
			조명		2.0	ea			
6	남동구 장수동	58-6	입간판	사랑채	1.0	ea	김*업	인천광역시 남동구운연동 ***-** 2층	변경
			수목	왕벚나무(H5.0xB35)	1.0	주			
			수목	향나무(H1.5xB15)	4.0	주			
			조명		3.0	ea			
			수목	단풍나무	5.0	주			
			수목	장미	4.0	주			
			수목	밤나무	1.0	주			
			수목	소나무	1.0	주			
			조경석		1.0	식			
6-1	남동구 장수동	58-6	입간판	힐링	1.0	ea	조*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동 ****호(논현동, *****)아파트)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	남동구 장수동	59-1	담장	동바리,망	37.0	m	김○○	인천광역시연수구 컨벤시아대로100, ○○	기정
			수목	단풍나무	13.0	주			
7	남동구 장수동	59-1	담장	동바리,망 (H1.8)	37.0	m	김*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컨벤시아대로 100,***동 ****호	변경
			수목	단풍나무(H3.0xB35)	30.0	주			
			수목	웃나무	15.0	주			
			수목	뽕나무	1.0	주			
8	남동구 장수동	66,66-1	바닥	소형고압블럭	4.0	m2	김○○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수동 ○○	기정
			간판		2.0	ea			
			담장	목재	21.0	m			
			수목	향나무	34.0	주			
				목련	1.0	주			
				능소화	1.0	주			
				촉백나무	5.0	주			
				앵두나무	1.0	주			
8	남동구 장수동	66,66-1	바닥	소형고압블럭	4.0	m2	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
			간판1	가나안 돈까스(조명포함)	1.0	ea			
			간판2	철제	1.0	식			
			담장	목재(H0.9)	27.0	m			
			수목	향나무(H1.2xB15)	1.0	주			
			수목	목련(H2.3xB20)	1.0	주			
			수목	능소화(H1.2xB15)	1.0	주			
			수목	촉백나무(H1.5xB10)	40.0	주			
			수목	앵두나무(H2.3xB20)	1.0	주			
			수목	소나무	1.0	주			
			견사	철제 등	1.0	식			
			수도시설이전		1.0	식			
			4쪽대문	목재6.5m	1.0	식			
			조경석	5m	1.0	식			
			기타동산		1.0	식			
9	남동구 장수동	65	담장	철제	2.0	m	운택○○	서울특별시종로구 내수동 ○○	변경 없음
				블록	15.0	m			
			대문	철제	1.0	식			
10	남동구 장수동	63-1	담장	헨스	58.0	m	최○○ 외 2인	서울시중구 신당동 ○○	기정
10	남동구 장수동	63-1	담장	헨스(H1.8)	58.0	m	최영재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번길 ***(괴안동)	변경
11	남동구 장수동	71	담장	목재	5.0	m	김○○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변경 없음
			바닥	목재데크	6.0	m2			
				조경석	10.0	m2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2	남동구 장수동	73	담장	목재	24.0	m	배○○ 외 1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담방로22-16 ○○	기정
			차양	철골조,천	25.0	m2			
			간판		1.0	ea			
12	남동구 장수동	73	담장	목재(H2.0)	24.0	m	배*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동 ***호	변경
			차양	철골조,천	25.0	m2			
			온수기		1	개			
			바닥콘크리트		6*3	m ²			
			바닥타일		1.5*1.5 *1/2	m ²			
			간판	금동이네	1.0	ea			
			가스다이 (파이프해체 포함)		2.0	개			
			세탁기		1.0	개			
			김치냉장고		4.0	개			
			야채냉장고		2.0	개			
			영양용냉장고		1.0	개			
			육수통		1.0	개			
			냉동고		1.0	개			
			후황밧박터		1.0	식			
			진열다이		3.0	개			
			바닥타일		1.5*1.5 *1/2	m ²			
13	남동구 장수동	72	담장	동바리,천	35.0	m	김○○	서울특별시 당주동 ○○	변경 없음
14	남동구 장수동	75-1	간판		2.0	ea	최○○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수동 ○○	기정
			담장	동바리,천	15.0	m			
			차양	천막	32.0	m2			
			바닥	콘크리트	32.0	m2			
			가시설	가시설,천	78.0	m2			
			수목	단풍나무	1.0	주			
14	남동구 장수동	75-1	수목	단풍나무	2.0	주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번길 **,***동 ****호(연희동, **아파트)	변경
			간판	감나무집	2.0	ea			
			담장	동바리,천(H1.0)	15.0	m			
			차양	천막	32.0	m2			
			바닥	콘크리트	32.0	m2			
			가시설	가시설,천	78.0	m2			
			수목	단풍나무(H3.5xB15)	1.0	주			
			수목	단풍나무(H2.0xB10)	2.0	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입법예고)제2017-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6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 제1조 ~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 : 제3조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5조 ~ 제6조
- 사업비 지원 및 관련정보 제공 : 제7조 ~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 :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1, 5033 / 팩스 032-453-5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49
----------	------

발의연월일 : 2017년 6 월 30 일

발 의 자 : 신동섭·전유형·이선옥 의원

찬 성 자 : 한민수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 제1조 ~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 : 제3조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5조 ~ 제6조
- 사업비 지원 및 관련정보 제공 : 제7조 ~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 : 제9조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자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7조
비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1호에 해당됨.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입법예고)제2017-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6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급식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공개의 원칙 : 제1조 ~ 제3조
- 구청장 책무 : 제5조
- 정보공개 대상 : 제6조
- 정보공개 방법 :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1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참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1, 5033 / 팩스 032-453-5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50
----------	------

발의연월일 : 2017년 6 월 30 일

발 의 자 : 신동섭·한민수·조영규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 급식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공개의 원칙 : 제1조 ~ 제3조
- 구청장 책무 : 제5조
- 정보공개 대상 : 제6조
- 정보공개 방법 : 제7조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어린이집급식”이란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따라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정보”란 어린이집이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공개”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어린이집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개 원칙)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유·관리하는 어린이집급식(이하 “급식”이라 한다)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 정보에는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친환경 급식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급식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과 관련된 영양·위생·안전·경영 등 급식운영관리가 포함된 어린이집 연간운영계획서
2. 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식단표
4. 급식 운영방식, 급식인원, 급식담당인력,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5. 식중독 발생 및 처리 현황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급식 식재료 원산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공개 방법 등) ①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급식 운영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2.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가공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67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7. 6. 28.부터 시행

2017년6월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통·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 일자 : 2017.6.28.

동명 \ 구분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66	3,690	4	15	670	3,705	
구월1동	38	195	0	0	38	195	
구월2동	41	211	0	0	41	211	
구월3동	42	220	0	0	42	220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5	163	0	0	25	163	
간석3동	42	217	0	0	42	217	
간석4동	39	207	0	0	39	207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1	156	0	0	31	156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5	211	0	0	35	211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47	229	4	14	51	243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3	210	0	1	33	211	
논현고잔동	32	180	0	0	32	18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6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40 외 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217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 길	120	2009. 11.16.	경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분기하는도로	2017. 06.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644번길 1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0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8-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40	2009. 11.16.	경신마을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7. 06.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신로 40 기초구간에위치하여40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11- 3	2011. 03.24.	배가 달았다는 옛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7. 06.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배려터로 11-3 기초구간에위치하여11-3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62번길	16- 7	2012. 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06.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62번길 기초구간에위치하여16-7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124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5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59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72-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74-1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3-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02번길	23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로32번길	12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30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0번길	17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5-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0번길	4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8-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40	2017.06.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69호

2016회계연도 결산 고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7.6.23)에서 의결, 확정된 2016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차입잔액						
		세입㉡	㉢/㉡	세출㉣	㉤/㉣	차입잔액 ㉥=(㉢-㉣)	㉦/㉥	현재년도 채무 상환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709,287,271,260	728,184,846,477	103 %	568,752,701,210	80 %	159,432,145,267	22 %		159,432,145,267	21,844,025,470	2,504,200,680	13,649,880,430	4,802,092,711	116,631,945,976
일 반 회 계	663,367,207,110	682,002,785,422	103 %	559,381,613,447	84 %	122,621,171,975	18 %		122,621,171,975	21,084,620,470	2,504,200,680	6,220,093,410	4,797,324,701	88,014,932,714
특 별 회 계	45,920,064,150	46,182,061,055	101 %	9,371,087,763	20 %	36,810,973,292	80 %		36,810,973,292	759,405,000		7,429,787,020	4,768,010	28,617,013,262
기타특별회계	45,920,064,150	46,182,061,055	101 %	9,371,087,763	20 %	36,810,973,292	80 %		36,810,973,292	759,405,000		7,429,787,020	4,768,010	28,617,013,262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2,002,976,000	12,149,090,870	101 %	1,089,181,750	9 %	11,059,909,120	92 %		11,059,909,120					11,059,909,1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307,853,000	10,267,032,003	100 %			10,267,032,003	100 %		10,267,032,003					10,267,032,00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555,000	15,695,054	101 %	15,374,080	99 %	320,974	2 %		320,974				180,000	140,97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20,004,000	1,022,140,296	100 %	931,294,990	91 %	90,845,306	9 %		90,845,306				4,588,010	86,257,29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7,042,000	241,514,600	117 %	1,500,000	1 %	240,014,600	116 %		240,014,600	50,000,000				190,014,600
장수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특별회계														
서창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특별회계														
도림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특별회계	650,000,000	648,339,521	100 %	648,339,521	100 %									
기반시설특별회계	49,107,000	49,107,874	100 %			49,107,874	100 %		49,107,874					49,107,874
주차장특별회계	21,667,527,150	21,789,140,837	101 %	6,685,397,422	31 %	15,103,743,415	70 %		15,103,743,415	709,405,000		7,429,787,020		6,964,551,395

- ※ 1. 현년도 채무상환은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
 2.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세입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
합 계	672,542,981,000	36,744,290,260	709,287,271,260	792,795,654,587	729,926,344,097	1,741,497,620	728,184,846,477	64,610,808,110	3,331,357,084	61,279,451,026	102.7 %	91.9 %
일 반 회 계	632,104,997,000	31,262,210,110	663,367,207,110	720,665,085,592	683,741,089,562	1,738,304,140	682,002,785,422	38,662,300,170	2,482,742,464	36,179,557,706	102.8 %	94.6 %
지방세수입	114,727,000,000		114,727,000,000	124,157,190,340	117,321,639,040	618,117,680	116,703,521,360	7,453,668,980	354,606,310	7,099,062,670	101.7 %	94.0 %
보통세	111,927,000,000		111,927,000,000	116,183,898,970	113,702,386,550	229,521,800	113,472,864,750	2,711,034,220		2,711,034,220	101.4 %	97.7 %
지난년도 수입	2,800,000,000		2,800,000,000	7,973,291,370	3,619,252,490	388,595,880	3,230,656,610	4,742,634,760	354,606,310	4,388,028,450	115.4 %	40.5 %
세외수입	46,630,512,000		46,630,512,000	80,413,349,737	49,619,209,547	414,491,000	49,204,718,547	31,208,631,190	2,128,136,154	29,080,495,036	105.5 %	61.2 %
경상적 세외수입	38,449,058,000		38,449,058,000	39,516,273,053	39,316,447,546	81,994,170	39,234,453,376	281,819,677		281,819,677	102.0 %	99.3 %
임시적 세외수입	8,181,454,000		8,181,454,000	40,897,076,684	10,302,762,001	332,496,830	9,970,265,171	30,926,811,513	2,128,136,154	28,798,675,359	121.9 %	24.4 %
지방교부세	7,052,000,000		7,052,000,000	9,842,982,000	9,842,982,000		9,842,982,000				139.6 %	100.0 %
지방교부세	7,052,000,000		7,052,000,000	9,842,982,000	9,842,982,000		9,842,982,000				139.6 %	100.0 %
조정교부금등	78,583,690,000		78,583,690,000	89,993,057,000	89,993,057,000		89,993,057,000				114.5 %	100.0 %

	자치구조정교 부금등	78,583,690,000		78,583,690,000	89,993,057,000	89,993,057,000		89,993,057,000				114.5 %	100.0 %
	보조금	318,984,723,000		318,984,723,000	319,821,304,380	320,526,999,840	705,695,460	319,821,304,380				100.3 %	100.0 %
	국고보조금등	228,547,472,000		228,547,472,000	229,177,582,440	229,801,597,440	624,015,000	229,177,582,440				100.3 %	100.0 %
	시·도비보조 금등	90,437,251,000		90,437,251,000	90,643,721,940	90,725,402,400	81,680,460	90,643,721,940				100.2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 거래	66,127,072,000	31,262,210,110	97,389,282,110	96,437,202,135	96,437,202,135		96,437,202,135				99.0 %	100.0 %
	보전수입등	66,122,860,000	31,262,210,110	97,385,070,110	96,432,990,805	96,432,990,805		96,432,990,805				99.0 %	100.0 %
	내부거래	4,212,000		4,212,000	4,211,330	4,211,330		4,211,330				100.0 %	100.0 %
	특 별 회 계	40,437,984,000	5,482,080,150	45,920,064,150	72,130,568,995	46,185,254,535	3,193,480	46,182,061,055	25,948,507,940	848,614,620	25,099,893,320	100.6 %	64.0 %
	기타특별회계	40,437,984,000	5,482,080,150	45,920,064,150	72,130,568,995	46,185,254,535	3,193,480	46,182,061,055	25,948,507,940	848,614,620	25,099,893,320	100.6 %	64.0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자구내공공시설 관리특별회계	11,902,976,000	100,000,000	12,002,976,000	12,149,090,870	12,149,090,870		12,149,090,870				101.2 %	100.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10,307,853,000		10,307,853,000	10,267,032,003	10,267,032,003		10,267,032,003				99.6 %	100.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555,000		15,555,000	15,695,054	15,695,054		15,695,054				100.9 %	10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20,004,000		1,020,004,000	17,294,445,306	1,022,140,296		1,022,140,296	16,272,305,010		16,272,305,010	100.2 %	5.9 %

제1367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7. 6. 30. 금요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7,042,000		207,042,000	253,395,690	241,514,600		241,514,600	11,881,090		11,881,090	116.7 %	95.3 %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50,000,000		650,000,000	648,339,521	648,339,521		648,339,521				99.7 %	100.0 %
	기반시설 특별회계	49,107,000		49,107,000	49,107,874	49,107,874		49,107,874				100.0 %	100.0 %
	주차장 특별회계	16,285,447,000	5,382,080,150	21,667,527,150	31,453,462,677	21,792,334,317	3,193,480	21,789,140,837	9,664,321,840	848,614,620	8,815,707,220	100.6 %	69.3 %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72,542,981,000	36,744,290,260	709,287,271,260	574,612,926,630	568,752,701,210	37,998,106,580	21,844,025,470	2,504,200,680	13,649,880,430	102,536,463,470
일 반 회 계	632,104,997,000	31,262,210,110	663,367,207,110	565,038,402,817	559,381,613,447	29,808,914,560	21,084,620,470	2,504,200,680	6,220,093,410	74,176,679,103
일반공공행정	34,927,781,000	299,883,000	35,227,664,000	32,464,741,206	32,464,218,176	501,790,000	173,790,000		328,000,000	2,261,655,824
공공질서 및 안전	5,116,913,000	1,178,453,840	6,295,366,840	5,476,046,870	5,396,751,490	259,265,040	259,265,040			639,350,310
교육	6,616,040,000		6,616,040,000	6,582,139,100	6,582,139,100					33,900,900
문화 및 관광	11,623,617,000	2,518,651,390	14,142,268,390	9,815,929,064	9,608,708,904	3,918,485,000	3,089,385,000	29,100,000	800,000,000	615,074,486
환경보호	19,556,870,000	1,416,405,870	20,973,275,870	20,105,674,232	19,828,629,852	302,554,660	302,554,660			842,091,358
사회복지	337,141,303,000	1,858,918,090	339,000,221,090	333,525,997,966	333,508,997,966	19,984,000	2,984,000	17,000,000		5,471,239,124
보건	16,047,576,000	170,120,000	16,217,696,000	15,499,848,300	15,499,848,300	191,920,000	191,920,000			525,927,700
농림해양수산	2,812,571,000	164,105,000	2,976,676,000	2,725,897,020	2,725,897,020					250,778,980
산업 · 중소기업	3,450,445,000	2,847,575,870	6,298,020,870	5,466,121,257	5,466,121,257	109,540,000	109,540,000			722,359,613
수송 및 교통	22,597,493,000	9,832,252,330	32,429,745,330	20,103,711,481	19,101,487,631	11,823,202,150	9,756,766,280	2,066,435,870		1,505,055,549

	국토 및 지역개발		36,785,209,000	10,975,844,720	47,761,053,720	37,526,329,671	33,452,847,101	12,682,173,710	7,198,415,490	391,664,810	5,092,093,410	1,626,032,909
	예비비		56,183,630,000		56,183,630,000							56,183,630,000
	기타		79,245,549,000		79,245,549,000	75,745,966,650	75,745,966,650					3,499,582,350
특 별 회 계			40,437,984,000	5,482,080,150	45,920,064,150	9,574,523,813	9,371,087,763	8,189,192,020	759,405,000		7,429,787,020	28,359,784,367
	기타특별회계		40,437,984,000	5,482,080,150	45,920,064,150	9,574,523,813	9,371,087,763	8,189,192,020	759,405,000		7,429,787,020	28,359,784,367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 지구내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11,902,976,000	100,000,000	12,002,976,000	1,089,181,750	1,089,181,750					10,913,794,25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0,307,853,000		10,307,853,000							10,307,853,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555,000		15,555,000	15,374,080	15,374,080					180,9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20,004,000		1,020,004,000	931,294,990	931,294,990					88,709,01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7,042,000		207,042,000	45,946,000	1,500,000	50,000,000	50,000,000			155,542,000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50,000,000		650,000,000	648,339,521	648,339,521					1,660,479
		기반시설특별회계	49,107,000		49,107,000							49,107,000
		주차장특별회계	16,285,447,000	5,382,080,150	21,667,527,150	6,844,387,472	6,685,397,422	8,139,192,020	709,405,000		7,429,787,020	6,842,937,708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7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6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26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19-1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1-1 6 외 2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 길	26	2009. 11.16.	경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6.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644번길 2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6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09 번길	46	2009. 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6.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409번길 4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40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09 번길	54	2009. 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6.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409번길 5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4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5-2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2번 길	73	2009. 11.16.	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6.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372번길 7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73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4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19- 13	2009. 11.16.	능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7. 6.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능골로 19-1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9-13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4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19-13	2017.6.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71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수산동 소2-2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 수산동 소2-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건설과(☎453-272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년6월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25-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2호선)
 - － 명 칭 : 능골지구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규모
 - － 소로2-2호선 : B=8.0m, L=90.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남동구청장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8.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용지조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325-1	도	631	293	국	국토교통부				
2	597-50	도	969	160	국	국토교통부				
3	597-96	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4	322-4	전	189	189	윤*철	남동구 배려터로 **	남동**** 조합	남동구 만수동 ****-*(신간석지점)	근저 당권	
5	319-5	전	23	23	신*섭	남동구 구수골로 ** (수산동)	남동**** 조합	남동구 장승로 ** (만수동)	근저 당권	
6	276-3	도	3,873	270	국	국토교통부				
7	277-1	도	1,338	48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173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6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 명 : (주)코람코자산신탁 [대표자: 김종수 (당초 : 정용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5-1번지
- 사업규모 : 공동주택(연립주택)/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지상4층(주건축물 18개동, 298세대)
- 건축면적 : 13,950.9254㎡
- 연 면 적 : 70,347.7034㎡
- 사 업 비 : 111,906,345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당초 : 2015. 11. 20. ~ 2017. 6. 30, 변경 : 2015. 11. 20. ~ 2017. 8. 3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